

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

(김기만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96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2월 1일

발 의 자 : 김기만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광수(도봉), 김선갑, 김영한,
김제리, 박운기, 서영진, 양준욱,
우창윤, 유동균, 이신혜 의원
(10명)

1. 제안이유

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교육 또는 홍보하는 법인·단체·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국기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나.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대한민국국기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1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국기”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기의 존엄성을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기 보급사업)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권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국가유공자
4.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5. 그 밖에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국기 선양사업)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
2.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 및 국기 사랑하기 운동 추진
3.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단체 등의 지원)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표창)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기관·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」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(조례안 제4조제1항)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
- 시장은 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(조례안 제4조제2항)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
-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(조례안 제5조)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
-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(조례안 제6조)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
- 국기계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기관·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 따라 포상할수 있다(조례안 제7조)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 대상 및 전제

- 대상
 - 국기 보급사업 (제4조제2항)에 해당하는 국기의 무상 보급 운영비용
 - 단,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특성상 대상, 범위 등에서 구체성이 없어 명시적 재정지원이 곤란한 사업이거나, 타 법률 등에 근거하여 기 시행 중인 사업이나 유사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추계대상 제외 사유	추계대상 제외 사업
지원 대상 · 규모 · 범위 등의 구체성이 없이 단순 조례근거 규정을 명시한 사업	· (제4조제1항) 국기 보급 사업추진 할 수 있다. · (제4조제2항제5호) 그밖에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· (제5조제1,2,3호) 국기 선양사업 · (제6조)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'16년 “시민 시상제도 운영 사업비”의 사무관리비로 96백만원 기 편성되어 별도 비용 미발생	· 제7조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기관·단체 등에 대한 표창

- 전제
 - 무상보급 대상자 중 중복되는 자에 대한 변수는 산정하지 않음
 - 국기 무상보급 사업은 태극기 내구연한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5년마다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기간: 시행일로부터 5년(2016~2020년)
- 비용산출 근거
 - 무상보급 대상자 수 × 태극기 단가(4,000원)
 - ※ 산출근거 :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의 보급형 규격(600×900) 판매가
- 국기 무상 보급 대상자 현황 :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

구 분	지급대상	자료 출처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권자	163,109건	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통계 <2014.12월 기준>
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인	398,908건	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<2015.12월 기준>
국가유공자	141,792건	국가보훈처 등록과 통계 <2015.12월 기준>
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	7,442건	국가보훈처 등록과 통계 <2015.12월 기준>
합 계	711,251건	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: 2,845백만원 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연도별 소요예산				
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국민기초 수급권자	652,435	-	-	-	-
장애인	1,595,630	-	-	-	-
국가유공자	567,170	-	-	-	-
고엽제 후유증 환자	29,765	-	-	-	-
합 계	2,845,000	-	-	-	-

4. 덧붙이는 의견: 없음

5. 작성자: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강평선 주무관(3705-1279)